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 
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11
----------	-----

2021. 12. 16.(목)  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연철흙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11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2월 1일

-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연철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방연마스크 비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3조 및 제4조)
- 방연마스크 비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관련기관,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대부분의 화재로 인한 사망은 화염에 의한 소사보다는 다량의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(窒息)가 큰 비율을 차지함.  
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피로 유독가스 흡입량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 확산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 일정 시간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음.
- 이에 따라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조례 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,
  - 경기, 인천, 제주 및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으로 현재 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함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 - 안 제1조 및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.
  - 안 제3조 및 제4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- 안 제5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- 안 제6조는 방연마스크의 보급·비치 확대, 필요시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입법예고('21.10.21. ~ '21.10.2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관부서에서는 비치장소, 비치량,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사항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」 등

#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(연철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1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1월 11일  
발 의 자 : 연철흙, 김기창, 서동학,  
박우양, 전원표, 황규철,  
송미애

## 1. 제안이유

-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방연마스크 비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방연마스크 비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관련기관,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협 의 :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
- 조례안 예고 : 2021.10.21. ~ 2021.10.27.(의회 홈페이지)

##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” (이하 “방연마스크” 라 한다)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하는 것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.
2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본청 및 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·합의제 행정기관
  - 나. 충청북도의회
  - 다. 「지방공기업법」 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
  - 라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·출연한 기관
  - 마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의료원
  - 바.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도에서 출연한 연구원
3. “의료기관”이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.
4. “보육시설”이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

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방연마스크 비치 등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,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,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.

1. 공공기관
2. 의료기관
3. 보육시설
4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

제4조(예산지원) 도지사는 제3조의 시설 중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·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홍보 및 교육)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방연마스크의 보급·비치 확대, 필요시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관계법령

#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9. 12. 3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#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공공기관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여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독가스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

## 2. 비용발생 요인

- 도, 도 소속기관, 도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
- 도 관리 또는 위탁 시설·기관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

## 3. 관련조문

- 공공기관, 의료기관, 보육시설 등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(안 제3조)
- 충청북도가 관리 또는 위탁하는 시설·기관 예산지원 가능(안 제4조)

## 4. 비용추계 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부서별 방화관리자 등 필수인원(비상대피 담당자 등 정원의 약 20%) 기준
- 단가 : 방연마스크 1매당 20천원(평균시장가격)
- 방연마스크의 사용기한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, 1차년도에 비치 후 시중 사용기한 경과(6차년도)시 주기적 반영을 전제로 추계

### 나. 추계 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
연도별 추계	24,920	24,920				

### 다. 재원조달방안

- 부서별 소액의 운영예산(일반수용비)으로 시행(별도 예산 미편성)  
※ 출자·출연기관에서 자체충당 또는 출연금 예산 교부 시 반영 검토

라. 산출내역

<충청북도>

(단위: 명, 원)

구 분	정원	정원의 20%	단가	소요예산	비고
<b>총 계</b>	<b>4,672</b>	<b>934</b>		<b>18,680,000</b>	
본청	1,345	269	20,000	5,380,000	
의회사무처	76	15	20,000	300,000	
직속기관	2,880	576	20,000	11,520,000	
사업소	292	58	20,000	1,160,000	
출장소	63	13	20,000	260,000	
합의제 행정기관	16	3	20,000	60,000	

<출자·출연기관(13개)>

(단위: 명, 원)

구 분	정원	정원의 20%	단가	소요예산	비고
<b>총 계</b>	<b>1,556</b>	<b>312</b>		<b>6,240,000</b>	
충북연구원	43	9	20,000	180,000	
충북인재양성재단	6	1	20,000	20,000	
충북학사	59	12	20,000	240,000	
충북신용보증재단	69	14	20,000	280,000	
충청북도기업진흥원	40	8	20,000	160,000	
충북과학기술혁신원	68	14	20,000	280,000	
충북테크노파크	172	34	20,000	680,000	
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	30	6	20,000	120,000	
충북문화재단	26	5	20,000	100,000	
청주의료원	598	120	20,000	2,400,000	
충주의료원	406	81	20,000	1,620,000	
충북여성재단	14	3	20,000	60,000	
오송바이오진흥재단	25	5	20,000	100,000	